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 - 19호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21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컨택센터를 유치하고자 함.
- 컨택센터 유치에 따른 지원 사업 분야와 규모를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및 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와 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 컨택센터 위탁운영을 규정함(안 제3조)
- 투자유치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보조금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보조금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 4. 2(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440-6232,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불임자료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을 근거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이란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을 말한다.
2. “컨택센터”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
3.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것을 말한다.
4. “기업 이전”이란 기업의 정관과登記부에 기재된 본사 또는 지사, 컨택센터 영업부서 등을 시 관할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 설치함을 말한다.
5. “기업 신설”이란 시 관할구역에 본사 또는 지사, 컨택센터 영업부서 등의 사업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업 증설”이란 시 관할구역에서 컨택센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업이 본 조례 제정 이후 상시고용인원 증원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 인원을 말한다.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

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8. “시설보조금”이란 컨택센터 서비스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말한다.

9. “건물임차료상당액”이란 건물을 소유하거나 신축한 자가 실제 사용면적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부터 평가받아 제출한 해당 건물의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컨택센터 운영 등) 시와 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컨택센터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투자유치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컨택센터 기업 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단 운영과 컨택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단은 「인천광역시 기업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기업유치 협력관으로 위촉된 자로 구성한다.

③ 투자유치단 운영과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 제공 등) 시장은 컨택센터 유치 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통수단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 사용) ① 컨택센터 기업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는 시와 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 소유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컨택센터 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행정지원) ① 시장은 컨택센터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공무원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인·허가, 원자재조달 및 인력알선 등 유치기업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사업 진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기준)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기업증설의 경우에는 증원된 상시고용 인원만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원도심 지역에 컨택센터 기업을 이전, 신설, 증설한 기업으로 컨택센터 관련 비영리법인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은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중 실제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단 보조금 지원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기업은 증설에 한하여 보조금을 재신청할 수 있다.

③ 시와 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컨택센터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제10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신청은 법인이전등기일, 사업 등록일,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보조금 지원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물임차료(임차료 상당액)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3.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제11조(보조금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보조금 신청서를 심사하여 보조금의 대상과 규모 결정을 위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의 기업유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심의 및 결정)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받으면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기업의 이전 및 신·증설 등의 상황을 현장 확인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은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을 받아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 결정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지원결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정명령 등)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지원을 받은 자에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2.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휴·폐업 또는 시 관할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3.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상시고용인원을 3년간 유지하지 아니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적용 등)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또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삭제한다.

제2조 중 제6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은 신규로 상시고용 인원 100명 이상 채용과 2주일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은 대상근로자의 인원수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기준(제8조 관련)

구 분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기간	지원한도	비 고
시설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기업, 상시고용인원 기준 1인당 30만원	6개월	3억원	
건물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상당액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기업, 1년간 건물임차료의 50% 또는 건물임차료 상당액의 50% 범위	1회	3억원	
고용보조금 (신규채용시)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기업, 초과인원 1명당 월50만원	6개월	3억원	

[별지 제1호서식]

시설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입주유형		☐ 기업의 본사 ☐ 지사 ☐ 컨택센터 사업장		
사업설립일 또는 사업장 이전일			업종 (산업분류)	
사업장 소재지		(유치지역명:)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인원(a+b)	유치시 인원(a)	신규채용(b)
		명	명	명
사업장규모		대지면적 : m ² , 건축연면적 : m ² , 좌석수 : 석		
투자금액액	합계	천원		비고
	기계장비	천원		☐ 매입 ☐ 임대
	시설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설치비 등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 및 내역 포함) 1부 2. 상시고용인원 증빙서류 1부 3.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시설투자 및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주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건물임차료(임차료상당액) 지원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이 전 내 역

입주유형	☐ 기업의 본사 ☐ 지사 ☐ 컨택센터 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투자금액	천원
상시 고용인원	신청시 인원(a+b)	유치시 인원(a)	신규채용(b)
	명	명	명
건물임차내역	임차료 : 천원(원/㎡)		
	임차면적 : ㎡		
	임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건물임차료 상당액	사용건물면적 : ㎡		
	월간 임차료상당액 : 천원(원/㎡)		
신청금액	천원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차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대 표 자 명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구 비 서 류	주 수 료 없 음
1. 사업계획서(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설치비 등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 및 내역 포함) 1부	
2. 상시고용인원 증빙서류 1부	
3. 건물, 토지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4. 임차료 상당액 증명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별지 제3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기업의 본사 ☐ 지사 ☐ 컨택센터 사업장					
사업장규모	대지면적: m ² , 건축연면적: m ² 소유 ☐ , 임대 ☐					
사업장 소재지	(유치지역명)					
법인등록일 (사업개시일)			업 종 (분류번호)	()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인원(a + b)	유치시 인원(a)		신규채용(b)		
	명	명		명		
신규채용일			상시고용기간	~		
시설투자금액	천 원		보조금신청금액	천 원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설치비 등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 및 내역 포함) 1부 2. 상시고용인원 증빙서류 1부 3.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tr><td style="padding: 2px;">수 수 료</td></tr><tr><td style="padding: 2px;">없 음</td></tr></table>					수 수 료	없 음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 ☐ 고용 보조금 ☐ 임차료(임차료상당액) ☐ 시설 보조금 지원심의결정서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	보조금 신청금액	☐ 고용보조금 : 천원 ☐ 시설보조금 : 천원 ☐ 임차료(임차료상당액) : 천원	
	보조금 신청내용		
심의결정액	지급심의 결정액	☐ 고용보조금 : 천원 ☐ 시설보조금 : 천원 ☐ 임차료(임차료상당액) : 천원 ※ 위원회 심의란(공란)	
	증액 또는 감액 내용	※ 위원회 심의란(공란)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 등 지원 결정통지서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조금 등 신청금액	천원		
총 지급결정액	천원		
지급결정내용	☐ 고용보조금 : 천원 ☐ 시설보조금 : 천원 ☐ 임차료(임차료상당액) : 천원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한 보조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조1항(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2조(사용·수익허가) ○ 산업발전법 제8조(지식서비스산업 육성)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1항(지식서비스산업 범위)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감정평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근로자파견계약서) ○ 근로기준법 제2조(단시간 근로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년미만 기간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 국민연금법 제3조(부담금 및 기여금 납부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납부자)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발전법

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식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2.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활성화 지원
 3. 새로운 지식서비스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4. 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5. 지식서비스산업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지원
 6. 지식서비스의 외주화(外注化) 촉진
 7.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 ③ 정부는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제3조제1항 관련)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전자상거래업	4791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4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
○병원	861
○의원	862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3.3.23>

7.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9.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내용등) ①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2010.6.4>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사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 근로장소
5.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7.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2004.3.17, 2005.2.19, 2008.2.29>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10.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문개정 2012.2.7.\]](#)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거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義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지휘·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시설보조금 지원 최고금액 3억원(조례8조)
- 건물임차료 지원 최고금액 3억원(조례8조)
- 고용보조금 지원 최고금액 3억원(조례8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컨택센터 기업이 시 관할구역 원도심 지역으로 이전, 신설 및 증설 하는 경우
- 지원기준에 충족하고, 연간지원 최고금액으로 계산
 - ※ 기업에 따라 고용인원 및 투자금액이 서로 다르고, 입주방식도 모두 다르므로 지원 금액 산출에 있어서 최고금액 추계 함.
- 시설보조금 지원 3억원 × 5개기업 = 15억원
- 건물임차료 지원 3억원 × 5개기업 = 15억원
- 고용보조금 지원 3억원 × 5개기업 = 15억원

나. 추계 결과

-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추계결과 연간 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컨택센터 기업이 더 많이 유치될 경우 지원금과 함께 지방세도 증가 할 것으로 보여 짐
- 기업 유치에 따른 고용창출로 도심공동화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발생

다. 재원조달방안

- 기업이 인천광역시에 투자하고 고용창출에 따른 실업을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에 대하여 지원 하는 제도로 일반회계로 예산편성 필요

※ 컨택센터 3만석 유치 효과

- 고용창출 : 3만명
- 지역경제 활성화 : 연간 7,488억원 발생
(인건비 5,760억, 간접비용 1,728억, 도심형생활주택 2,000호 등)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허 인 환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입	지방세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15,000,000
	소계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15,000,000
세출	일반회계	4,5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40,500,000
	소계	4,5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40,500,000
재원 조달		4,5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40,500,000
국 비		0	0	0	0	0	0
시비	소 계	4,5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40,500,000
	일반회계	4,5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9,000,000	40,500,000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군·구비		0	0	0	0	0	0
민 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 2014년부터 유치기업을 매년 5개 기업으로 함